

제205회 거창군의회
<임 시 회>

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
민간위탁 동의 요구(안)

거 창 군

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(안)

의안 번호	2014 ~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	2014. 10. .
제 출 자	농업기술센터소장

1. 제안이유

- 「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」의 물류·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.
- 근거 :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2. 주요내용

가. 연 왕

- 시 설 명 :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
- 위 치 :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번지
- 규 모
- 부 지 : 36,376m²
- 연 면 적 ▮ 당초 : 8,219m²(선별 3,499m², 저장 1,780m²(1,440톤) / 기타 2,940m²)
 └ 보완 : 2,874m²(저장 1,467m², 선별 1,171m², 기타 236m²)
- 시설내역 : 선별기(1일 50톤 / 연간 10,000톤 처리) / '13년도 6,366톤

나. 위탁사무

- 시설 : 유통센터 토지·건물·기계·물류기기 유지관리
- 운영 : 농산물 수집·출하·판매기능 등

다. 운영계획

- 재위탁 운영
 - 수탁기관 : (주)NH유통 (대표 신인재)
 - 위탁기간 : 2015년 1월 1일 ~ 2018년 12월 31일까지(4년)
- 위탁운영 방법
 - 시설물 관리, 농산물 수집·출하·판매기능 등 통합운영
 - 거창군·함양군·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
 -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, 출하자에게 산지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
 -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장비와 인력 확보, 기술 및 재정지원을 통한 원물의 고급화 노력 이행

라. 소요예산

- 없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「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15조 제2항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 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

나. 양우계획

- 운영주체 선정 군의회 동의 : 2014년 10월
- 거점APC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: 2014년 11월
- 위탁 운영 실시 : 2015. 1. 1 ~ 2018. 12. 31.

다. 위탁운영계획 : 따로 붙임

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 계획

- (주)NH유통에서 지난 5년('09~'14년)간 위탁 운영한 서북부경남 거점APC의 위탁 기간이 만료('14. 12. 31)됨에 따라
-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(주)NH유통에서 재위탁 운영하고자 함.

I. 법적근거

-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제2항
-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.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 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

II. 시설개요

□ 거점APC 건립 연혁

- 2005. 5. 19 : 서북부경남 거점APC 대상자 선정 (농림축산식품부)
- 2007. 3. : 조합공동법인 ⇒ 농업회사법인으로 운영주체 변경
- 2007. 5. 30 : 농업회사법인 (주)NH유통 설립 / 대표공모 이찬일
- 2008. 9. 9 ~ 2009. 10. 25 : 서북부경남 거점APC 건립
- 2009. 5. 1 : (주)NH유통 운영주체 변경 / 대표 신의재
- 2012. 9. : 서북부경남 거점APC 시설보완사업 준공

□ 시설현황

- 위 치 : 거창·거함대로 3372 / 거창·함양·합천군
- 사 업 비 □ 당초 : 19,303백만원(기금7,750, 도비3,100, 거창7,012, 함양1,240, 합천201)
↳ 보완 : 3,279백만원(국 10, 기금 1,560, 도 624, 군 1,085)
- 부 지 : 36,376㎡
- 연 면 적 □ 당초 : 8,219㎡(선별 3,499㎡, 저장 1,780㎡(1,440톤) / 기타 2,940㎡)
↳ 보완 : 2,874㎡(저장 1,467㎡, 선별 1,171㎡, 기타 236㎡)
- 시설내역 : 선별기 (1일 50톤 / 연간 10,000톤 처리) / '13년도 6,366톤

□ 운영현황

- 위탁기간 : 2009. 11. 17 ~ 2014. 12. 31 (5년, 1개월간) / 무료
- 운영주체 : 농업회사법인 (주)NH유통/ 대표이사 신인재
 - 주관농협 : 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 / 조합장 윤수현
 - 참여농협 : 14개소 / 거창7, 함양2, 합천5
- 자본금 : 2,000백만원 / 거창원협 51% - 주관농협

III. 위탁추진 계획

□ 위탁선정

-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('14.10.17.)
: 4년간 재위탁 결정
- 위탁기관 : (주)NH유통
- 위탁기간 결정 : 2015. 1. 1 ~ 2018. 12. 31
- ※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: 14명 (위원장1, 부위원장 1, 위원 12)
 - 위원장 : 거창군 부군수
 - 위 원 : 13명 이내
(공무원6, 군의원1, 생산농가2, 함양·합천군수3, 전문가1)

□ 위탁범위

- 시설 : 산지유통센터 토지·건물·기계·물류기기 유지관리
- 운영 : 농산물 수집·출하·판매기능 등

IV. 양우계획

- 운영주체 선정 군의회 동의 : 2014년 10월
- 거점APC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: 2014년 11월
- 위탁운영 실시 : 2015. 1. 1 ~ 2018. 12. 31.

V. 소요예산 : 해당없음

VI. 기대효과

- 유통센터의 물류·유통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체제 구축

관 계 법 령(요약)

□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(제정) 1999.07.15 조례 제1515호

(일부개정) 2008.01.14 조례 제1878호

(일부개정) 2013.06.12 조례 제2138호

(일부개정) 2014.05.28 조례 제2192호

관리책임부서 : 행정과

연락처: 055-940-3170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(개정 2013.6.12)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.(개정 2013.6.12)

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·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(개정 및 후단신설 2013.6.12)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(개정 2013.6.12)

□ 「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

제4조(기능)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·선별·포장·저장·판매
2. 농산물의 세척·절단·살균·포장 등 신선편이 상품의 생산 및 판매
3.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·소매업,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
4. 농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
5.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설치운영) 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유통센터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
2.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사업
3. 그 밖에 군수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5조(운영위탁)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
2. 제1호의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
3.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유통업체
4. 제1호의 생산자단체, 제2호의 법인 및 전문유통업체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
5.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3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

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.

③ 유통센터의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.

제17조(운영주체 선정) ① 군수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산물의 수집·판매능력, 투자계획, 자금조달계획, 경영계획, 인력확보

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18조(위탁협약 및 지정)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운영주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,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지정서 교부 시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.

제23조(운영방법)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, 농산물 수집·출하·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운영주체는 거창군·함양군·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.

③ 운영주체는 농산물의 표준화·기계화·규격화·공동출하 등을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,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, 우수농산물품질인증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,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원물의 고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5조(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)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토지, 건물, 기계, 물류기기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·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,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.

②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 시설·설비의 설치, 부수장비의 유지, 개·보수,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 다만, 운영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, 시설물 및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교체, 대수선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③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,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를 관리·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.